

수산연구본부

한덕훈 전문연구원, bansock1@naver.com

# UN 수산결의안 최근 논의 동향 분석 및 정책적 함의

2015. 04

## CONTENTS

- I. 서론 ... 01
- II. UN 수산결의안 최근 논의 동향 ... 04
- III.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20
- IV. 결론 및 향후 과제 ... 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요약〉

- UN 수산결의안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성법(soft law)적 성격을 가짐. 결의안 검토회의는 수산 관련 각종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 담당. 특히, FAO 등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도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선제적으로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추상적인 문구를 도입하는 작업을 선행함
- UN 수산결의안의 조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분야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의미함. 특히, IUU어업행위, 지속가능한 수산업, 여러 국가 간의 지역적 협력,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수산업 문제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음
- 상어 관련 이슈를 EU, 캐나다, 호주 등 국가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기에 국가행동계획을 개정하고 실태를 점검해야 함. IUU어업행위 규제는 향후에도 글로벌적 이슈이기 때문에 EU,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여부 결정 이후에도 외국 법제 동향과 이행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책임 있는 수산업국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국가관할권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보호(BBNJ)문제가 해양환경분야 외에도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해상 조업의 안정성 확보를 노력해야 함. 2016년에 예정된 공해상 저층어업에 관한 워크숍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국내적으로 꾸준히 준비해야 함

- 해양수산분야 국제전문가를 꾸준히 육성하고, 해양수산의 여러 분야가 연관된 국제문제가 대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대처해야 함. 불법어업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관한 결정도 국내 대응방안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임. 향후에는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 소송에 반드시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룰메이커로서 기여해야 함

# I. 서론

## ▶ UN 수산결의안 회의<sup>1)</sup>는 수산 관련 각종 국제적 논의 주도 역할 수행

■ 해양수산 관련 국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중요 국제회의 중 하나임

- FAO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UN에서 채택된 수산결의안 문구를 근거로 하여 자국 혹은 자신의 국제기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근거로 활용
- 따라서 FAO 등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법규범을 성립시키고자 할 때, 사전적으로 UN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관련 취지를 담은 문구의 도입을 논의하고,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선행함

## ▶ UN 수산결의안 법적 성격

■ UN 수산결의안의 문구내용은 직접적인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후의 관련 국제회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을 채택한다면 관련 내용이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형성되어가는 법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연성법(soft law)라고 할 수 있음

---

1) United Nations informal consultation meeting on sustainable fisheries, Sixty-ninth session Agenda item 74(b),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sustainable fisheries, including through the 1995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nd related instruments

## ▶ UN 수산결의안 연혁

- UN 총회에서 수산 부문은 90년대부터 논의되었으며, 불법어업부수어획 근절 등 산발적 이슈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2002년 제57차 총회에서 수산이슈들을 통합하여 UN 수산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하기 시작함
- 유엔해양법협약('82채택), UN공해어업협정('95채택) 이행 등을 근거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존을 위하여 유엔총회에서 매년 결의사항을 채택

## ▶ 회의 진행 과정

- ① 기존 결의(안)에 대한 각국 수정 의견 사무국 제출(~10월) ② 연례회의 개최(뉴욕, 11월) ③ 연례회의에서 각국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조정관이 문구조정 여부 질의 및 합의 유도 ④ 도달된 최종 합의문은 UN 총회에 상정함(12월)

## ▶ 주요 내용 (2014년 제69차 수산결의안 기준)

- 전체 조문 구조
  - 전문, 본문 14장·19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IUU어업 근절, 과잉어획능력, 부수어획, 해양생태계에서의 책임 있는 수산업, 역량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
- IUU어업 관련
  - IUU어업 근절을 위한 각국의 협력 강조 및 FAO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비준 가속화 독려

### ■ 부수어획 관련

- 부수어획 등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기 위하여 어류군집장치 사용을 평가, 감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각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수어획, 폐기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지는 내용 포함

### ■ 해양생태계에서의 책임 있는 수산업

- 취약한 해양생태계(VME, Vulnerable Marine Ecosystem)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해역에서의 저층어업(Bottom Fishing)에 대해서는 FAO의 저층어업 가이드 라인(08)에 협력한다는 내용 포함
- 2016년에 저층어업 이행평가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가 예정<sup>2)</sup>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내의 보완조치와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수집 등 필요

### ■ 수산 및 양식 분야에서 교육훈련사업의 중요성 강조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규정들 이외에 개발도상국의 수산양식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그중 특히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

2) 기존 수산결의안 회의에 따르면 2015년에 동 회의가 예정되었으나, 유엔회의장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추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2016년에 저층어업워크숍을 개최할 것에 회원국들은 동의하였음 (2014년 제69차 UN 수산결의안 회의 결과보고서 및 69차 수산결의안 OP161, OP162 참조)

## II. UN 수산결의안 최근 논의 동향

### 1. UN 수산결의안 전문(前文) 구조 및 주요 내용

#### ▶ UN 수산결의안 전문 현황

- UN 수산결의안 전문에 규정된 조항(Preamble Paragraph)은 2014년도 제69차 결의안을 기준으로 총 52개가 규정됨
-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수산결의안의 전문 조항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전문의 내용은 본문에서 도출된 문구 중에서 제안국이 특별히 다시 강조하거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또는 수산결의안의 전체적인 이념도 포함 가능
- 전문의 조항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수산결의안 본문 내용 중 중요하거나 강조되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도 내포함. 또한 UN 수산결의안 전문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
-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결의안 조항의 표현을 통하여 현출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

#### ▶ UN 수산결의안 전문 조항 수 변화 (2003-2014년)

년도	유엔전문 조항 수	전년대비 증가율(%)
2003	24	-
2004	26	8.33

년도	유엔전문 조항 수	전년대비 증가율(%)
2005	33	26.92
2006	27	-18.18
2007	33	22.22
2008	36	9.09
2009	31	-13.89
2010	36	16.13
2011	44	22.22
2012	47	6.82
2013	47	0.00
2014	52	10.7
총합계	436	-
평균 증가율	-	2.54

▶ UN 수산결의안 전문 주요 내용 분석

- (NPAFC 활동) 캐나다는 해양자원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형유자망어업 철폐를 위해 그간 북대서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 회원국이 기울여 온 성공적 협업 노력을 평가하는 문안을 제안하여 채택됨
- 대형유자망어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상기 위원회의 회원국들이 협업하여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기여한 노력을 타 UN회원국도 인정
- (CITES 상어 추가등재 등 관련) EU 및 호주는 2013년 3월 방콕에서 개최된 멸종위기동물식물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회의 시 결정된 동 협약 제2부속서상 5종의 상어 및 2종의 가오리 추가등재를 ‘환영(welcome)’ 한다는 문구를 제안하여 ‘주목(note)’으로 표현이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채택됨
- 동 부속서는 귀상어, 장환홍상어, 악상어 등에 대한 국제거래를 규제

- 중국,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등 다수 회원국은 동 추가등재 결정 시 유보 또는 반대국이 많았던 점을 강조하면서 ‘환영’ 보다 의미가 다소 약화된 ‘주목(note)’ 한다는 문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그렇게 채택됨
- 상어 관련 문구는 최근 매년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제안되고 논의되는 이슈임. 주된 제안국이 EU, 미국, 호주이며, 이 국가들은 상어의 완전한 이용(full utilization)을 주장하면서, 완전보유(full retention)를 주장하는 특징이 있음
- 최근 수년간 상어어획에 있어서 반명문적인 어획의 금지 즉, 상어몸통 해상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있었음. 이를 통하여 동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회원국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하지만, EU에서 주장하듯이 상어의 완전 보유만이 지속가능한 어업에 합당한 것인지 국제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함
- 하지만, 상어지느러미 피닝 문제는 향후에도 UN 수산결의안 회의 및 타 수산 관련 국제회의에서 주된 논의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의 제안) 멕시코는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CCRF,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을 수산결의안에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임을 주장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공해어족 자원보존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에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에 대한 문구를 추가할 것을 주장
- 아이슬란드 등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안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같은 수준에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함
- 미국은 이미 다른 전문 조항에 동 규범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추가적으로 행동규범에 대한 언급을 이곳에서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대하여 결국 기존의 문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음

- (Rio+20 결과문서 문안 반영) 호주 및 EU 등이 ‘Rio+20 결과문서(제목: The Future We Want)’의 관련 문안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여 회원국 다수는 관련 문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문안으로 채택됨
- 2012년 7월에 채택된 Rio+20 관련 결의안의 문구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수산결의안에 채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남
- (수산보조금 관련) 멕시코는 과잉어획(overfishing and overcapacity)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관련 WTO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동 협상의 조속한 재개로 협상을 조속히 타결시키자는 문안 반영을 주장
- 한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국제통상문제를 WTO가 아닌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함을 이유로 하여 원문 그대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원문 그대로 존치 주장
- 미국은 기존의 문구를 찬성하나 조속한 협상의 타문구를 넣자고 주장
- 아이슬란드, EU 등은 통상문제는 WTO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격론 끝에 동 협상타결을 가속화(accelerating work to complete)하자는 호주의 타협안에 합의함
- 특히, 미국은 2014년 UN 수산결의안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남획, 초과어획을 유발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문안을 제시함. 그러나 매년 갱신되는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특정 목표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왜 2020년인지 등 타 회원국의 의문이 제기됨. 최종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동 문안은 결의안에 도입되지 않음
- (수산물 교역의 공정성) 수산물의 효과적인 시장접근(effective market access)과 관련하여 멕시코가 공정한 수산물 교역을 보장하기 위한 저해 요소(unnecessary,

hidden barriers 등)를 철폐하는 문안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함

- 우리나라, 미국, 칠레 등은 unnecessary, hidden, illegal, unlawful barrier라는 개념이 모두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며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국제통상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토론이 벌어짐이 적절하지 않고, 통상문제는 WTO에 관한 사항임을 주장함
- 미국, EU는 너무 많은 무역 관련 이슈가 수산결의안에 들어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함. 최종적으로 멕시코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음
- (조업선 등 IMO등록번호제 시행) EU는 IUU어업 방지를 위해 제31차 FAO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어선, 냉동운반선, 설비공급선에 대한 세계어선등록부(global recor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는 제안을 하여 채택됨(2014년 수산결의안)
- 세계어선등록부 시스템은 IUU어업행위를 한 어선에 대한 식별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 UN 수산결의안 본문 구조 및 주요 내용

### ▶ UN 수산결의안 본문 현황

- UN 수산결의안 본문은 총 19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2014년도 제69차 결의안 기준)
-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수산결의안의 본문의 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본문은 세부적으로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은 결의안 내에 국제수산 거버넌스 관련 규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수산질

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지속가능한 수산업, IUU어업행위, 소지역적 및 지역적 협력, 해양생태계에서의 책임 있는 수산업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꾸준히 부각되어 옴**

- 제1장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련 조항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임
  - 2003년에는 4개 조항으로 출범하였던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관한 제1장이 2014년에는 26개의 조항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수산결의안 도출 목적 중의 하나라는 점과 긴밀히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제9장 소지역적 및 지역적 협력은 28개의 조항으로 가장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수산분야의 문제를 각국의 협력과 공조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노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제10장 해양생태계에서의 책임 있는 수산업 조항은 최근 MPA설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급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임. 현재 26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 제4장 IUU어업행위에 관한 조항이 2003년에 이미 14개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최대의 조항으로 출범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사회의 IUU어업행위 문제에 대한 심도 높은 관심을 반영함

▶ UN 수산결의안 본문 조항 구조

제1장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Achieving Sustainable Fisheries)	제8장 부수어획 및 어획물폐기 (Fisheries by-catch and discards)
제2장 UN공해어족자원협정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1995 Agreement)	제9장 소지역적 및 지역적 협력 (Subreg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제3장 수산업 규범 관련 (Related fishery instruments)	제10장 해양생태계에서 책임 있는 수산업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
제4장 IUU어업행위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제11장 역량강화 (Capacity-building)
제5장 조업감시체제 준수 및 집행방안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and compliance and enforcement)	제12장 UN시스템하의 협력 (Cooperation within the United Nation System)
제6장 과도어획능력 (Fishing overcapacity)	제13장 UN해양법국 활동 (Activities of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제7장 대형유자망어업 (Large scale pelagic drift-net fishing)	제14장 UN총회 관련 (69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2014년 69차 UN 수산결의안 본문조항 기준)

▶ UN 수산결의안 본문 조항 수 변화(2003-2014)

장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증가율(%)
I 지속가능한 수산업	연도	4	4	8	12	15	17	18	19	21	25	24	26	22.53
	이행	9	15	19	16	17	19	20	15	15	16	17	22	8.87
III 수산업 규범 관련		5	6	5	4	4	5	5	5	6	6	7	7	4.5
IV IUU 어업행위		14	13	14	14	19	18	17	17	18	21	24	27	6.23
V 조업감시체제 준수 집행방안		-	-	-	10	11	9	11	12	11	12	13	15	4.60
VI 과도어획능력		3	5	3	2	5	5	6	6	6	7	7	7	18
VII 대형유지망어업		1	1	1	1	1	1	1	4	4	3	3	3	27.5
VIII 부수어획 및 어획물폐기		3	5	3	3	4	5	7	8	9	12	13	13	19.35
IX 소지역적 및 지역적 협력		6	8	9	13	16	18	20	24	25	26	26	28	16.51
X 해양생태계 채집 있는 수산업		8	18	20	19	13	14	27	19	30	21	23	26	20.79
XI 역량강화		3	3	6	7	8	9	10	12	12	14	16	16	20.55
XII UN 시스템하의 협력		2	3	3	3	3	2	2	2	2	2	2	2	1.67
XIII UN 해양법국 활동		-	-	-	-	-	-	-	-	2	2	2	2	0.00
XIV UN총회 관련		3	3	3	3	3	3	3	3	4	3	3	3	0.83

(2014년 UN 수산결의안 본문 조항 기준)

## ▶ UN 수산결의안 본문(Operative Paragraph) 주요 내용 분석<sup>3)</sup>

### 제1장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 (Rio+20 결과문서 내용 포함) 2012년도 제67차 수산결의안 회의 시 대다수 찬성으로 결의안에 반영된 'Rio+20 결과문서<sup>4)</sup>(제목: The Future We Want)'의 수산 관련 문안을 결의안 본문에서 언급함. 이를 통하여 UN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의미를 가짐
- (상어 양륙, 피닝 및 판매 금지) EU, 코스타리카, 나우루, 몰디브 등은 상어 피닝을 지속가능하지 않고(unsustainable), 미개한(uncivilized) 행위라 지적하며 상어 피닝, 양륙 및 판매를 금지(prohibit)하자고 제안하였으나,
  - 이에 대해 중국 및 일본은 동 제안은 수용 불가하며, 회원국에 재량권을 부여한 기존 문안의 존치를 강조하였음. 호주 또한 '금지'라는 문구에 대해 강한 유보적 입장을 표명
  - 한국은 상어 피닝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각 기국이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차원에서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한국은 어선원의 안전과 저장창고의 문제 등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동시에 논의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함
  - EU는 자신들의 제안의 취지는 상어를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용을 하자고 주장함. 또한 상어지느러미가 자연부착 상태로 양륙된 경우만이 자원보존 조치에 합당하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은 많은 반발을 함

3) 2014년도 제69차 수산결의안 기준

4)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회의 결과임. UN 차원에서 정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타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협의하여 문서로 발표하였음. 동 문서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련 문제도 포함됨(<http://www.uncsd2012.org/content/documents/727The%20Future%20We%20Want%2019%20June%201230pm.pdf>)

-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중국은 지역수산기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5% 완전보유가 자원보존조치에 합당하다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함
-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상어피닝에 관한 기존 수산결의안 문구로 존치 합의함(2013년 수산결의안)
- EU는 상어지느러미 절단 금지 및 죽은 상어의 완전 이용(full utilization of dead sharks)을 촉구하는 문안을 제안함.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조업국 측과의 반대 논쟁 끝에 결국 절단 금지 제안은 철회하고, 상어의 완전 이용 촉구 문안은 권고(encourages)한다는 표현으로 완화되어 채택됨<sup>5)</sup> (2014년 수산결의안, OP15하단)

## 제2장 공해어족자원보존협정 이행

- 2015년 3월에 양일간 공해어족자원보존협정(UN Fish Stock Agreement)에 대한 제11차 당사국회의 개최 예정을 확인함. 동 회의는 2016년 상반기에 일주일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공해어족자원협정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 대한 준비회의 성격도 포함함(2014년 수산결의안, OP40 및 OP43 참조)

## 제3장 IUU어업

- (어획증명서) 어획증명서(catch documentation, 전자 방식 포함) 사용 등 시장 관련 조치를 공정·투명·무차별한 방식으로 도입·이행하자고 EU가 제안함
- 이에 대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칠레 등은 특정 지역(유럽 등)에만 통용되는 어획 증명서를 요구함은 수산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으로 작용할

5) 즉, 2014년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동 제안과 관련하여 촉구한다(urge)는 표현에서 권고한다(encourage)라는 표현으로 완화하여 EU는 수정 제안하였고 합의되었음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오히려 공통 어획증명서(a common catch documentation)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여 결국 채택되지 못함

- 반면, 노르웨이는 공통어획증명서 양식(format) 개발을 위해 FAO 차원에서 관련 지침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작업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문안을 제안하여 채택됨(2013년 수산결의안)
- 또한 제31차 FAO수산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채택된 공통어획증명서 양식(format)을 개발하자는 문구를 2014년 수산결의안에서 다시 채택하였음. 이는 FAO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양식(format) 개발의 틀 안에서 어획증명서 개정을 위해 각국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2014년 수산결의안, OP76 및 OP77 참조)
- 이에 따라 2015년 7월 경 (잠정) FAO에서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IUU어업행위) IUU어업행위와 관련하여 참여적 감시제도(participatory surveillance) 촉구(EU),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작업결과를 결의안 내용에 포함하자는 주장(노르웨이), 어업범죄 단속을 위한 인터폴 회의 개최 사실 부각하는 주장(미국), 어업분야 인권유린 상황 개선 촉구하는 주장(미국) 등 IUU 어업행위를 국제 형사범죄화하려는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고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됨
- (참여적 감시) 모든 합법적 조업을 포함한 ‘해상에서의 참여적 감시(participatory surveillance activities at sea)’를 통해 IUU 어업 식별을 강화하자는 EU의 제안에 대하여,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다수 국가들은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아르헨티나 및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해상(at sea)의 범위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반대 표명함

- 최종적으로는 EU가 주장한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참여적 감시 제도의 발전을 인정하지는 수준으로 채택됨
-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IUU 어업 식별 및 감시 활동이 EEZ 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함
- (UNODC 작업결과 포함여부) 어업 분야에 있어서 초국가적 범죄(마약밀매, 인신매매 어선원 착취 등)<sup>6)</sup>발생 증가를 분석한 2011년도의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보고서 이후의 최근의 연구와 노력에도 주목하지는 취지로 작업 결과(work)로 문구를 바꾸어 넣자는 노르웨이의 제안에 대하여,
  - 미국, 러시아 등은 IUU 어업이 초국가적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동 제안을 지지하였으나,
  - EU,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등은 기본적으로 2011년도의 동 보고서상 IUU 어업 행위 자체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초국가적 범죄와 IUU 어업 간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기존의 결의안 문안('study'로 표현되어 있음)으로 존치 합의됨
- 2011년 UN마약범죄사무소의 연구와 어업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어업범죄(fisheries crime)'라는 용어를 창출 하였음
- 결국 어업범죄에 대한 동 논의가 의도하는 바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각국의 국내 형사법률에 관련 처벌 조항의 삽입 등 국내 입법이 이루어

6) 동 논의와 관련하여 어선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마약밀수, 어선원착취, 특히 세금포탈의 문제를 어업범죄(fisheries crime)라고 명명하고 규율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존재함. IUU 어업행위가 거버넌스의 문제, 어업행위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함에 반하여, 어업범죄의 문제는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의 강화, 국제적 공조, 국내적 형법적 입법 등이 관련되는 국제적 노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2015.1.26. 노르웨이 무역산업수산부 IUU 어업행위 담당자 출장 면담결과)

질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노력하지는 의미로 파악됨

- 향후 동 문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의 확산<sup>7)</sup>을 통하여 IUU어업행위에 대한 국제적 통제와 어업범죄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터폴 회의 개최) 2013년 2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제1회 인터폴 국제집행 회의 및 Project SCALE의 공식 출범에 주목하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하여,
  - EU, 아이슬란드, 캐나다, 일본 등은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등은 인터폴 관련 이슈를 동 결의안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최종적으로 미국은 제안을 철회함
  - 그러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터폴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회원국의 관심을 요청하고, 향후 수산결의안 회의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임을 천명함(2013년도 및 2014년도 UN 수산결의안 회의)

## 제5장 감시체제 이행 및 준수방안

- (어업분야 인권유린 상황) 해상 인신매매, 강제노동, 어선원 착취 등 어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을 개선하자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의 2013년 해상에서의 불법상황에 대한 보고서(Caught at Sea)를 주목하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하여,

---

7) 최근 개최된 유엔 형사예방 및 형사정의 의회(13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inal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Doha, 12-19 April, 2015)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증진시킬 것을 천명하는 도하선언(Doha Declaration)을 채택하였음. 또한 동 회의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초국가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ation crime)을 논의하였고, 이에는 어선원 인권유린, 인신매매, 마약밀수 등이 모두 포함되었음. 즉, 어업범죄의 개념은 이제 형사법에 대한 UN의 회의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은 적극 찬성하였으나,
- EU 및 아르헨티나는 동 제안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수산결의안보다는 해양법 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ILO 총회 차원에서 아직 동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함
-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문구(1문)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인신매매와 어선원 착취에 대한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각국에 권유한다는 문구(2문)는 그대로 채택하도록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짐(2013년도 수산결의안)
- 상기 제안도 역시 어업범죄 관련된 문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어선원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증하며, 수산결의안에서도 역시 예외는 아님을 보여줌
- (IMO의 조업선고유등록번호제 실시 관련) 뉴질랜드는 조업선고유등록번호제가 IUU 어업행위 근절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00톤 이상의 조업선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동 제도를 이행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대하여 대다수가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등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동 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됨(2013년 수산결의안)
- 또한 각국과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가 세계어선등록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문안도 채택됨(2014년 수산결의안)

## 제10장 해양생태계에서의 책임 있는 수산업

-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미국은 전 세계 40여 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중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Resources: CCAMLR)만이 유일하게 해양보호구역(MPA) 관련 기준을 성실하게 발전시켜온 사실을 지적하며, 조업 행위와 관련한 해양보호구역(MPA) 기준 설정 및 동 기준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 간 협업을 촉구함. 이에 대해 회원국 사이에 대립되는 입장이 있었음

- EU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해양보호구역(MPA) 설정에도 불구하고, 동 해양보호구역(MPA)에서 불법조업이 성행한 전례를 언급함. 따라서 미국의 제안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이슬란드는 과도한 해양보호구역(MPA) 기준 설정은 지역수산기구(RFMOs)의 권한 약화 및 해양법협약상의 국가 관할권 침해 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러시아를 포함한 대다수 회원국들은 해양보호구역(MPA) 설정과 관련하여 지역수산기구(RFMOs) 간 협력을 권장하고 있는 기존 문안의 존치를 희망함
- 최종적으로 미국은 제안을 철회하고 기존의 수산결의안 원안이 존치됨(2013년 수산결의안)

## 제11장 역량강화

-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수산업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FAO를 포함한 유엔체제하에서 회원국 상호 간 협력을 권장하는 문구를 한국이 제안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EU, 칠레, 나우루 등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채택됨
- 배경 설명으로 기존 결의안들이 재정적·기술적 측면에서만 개도국 역량강화 이슈를 다루어 온 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수산(sustainable fisheries)을 추구하는 동 결의안의 기본 목적 등을 감안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대개도국 역량강화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2013년 수산결의안에서 최초로 수산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구가 한국의 제안으로 들어옴
- 역시 한국의 제안으로 수산분야 이외에 '양식분야에서의 교육 훈련의 중요성' 관련 문구가 추가됨(2014년 수산결의안, OP180)

### III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1. 상어 국가행동계획 개정 및 조속한 실태 점검 필요

##### ▶ 향후 EU, 호주, 캐나다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 예상

- EU는 상어이용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상어지느러미를 자연보유상태에서 양륙하는 것만이 자원보존조치에 합당하다는 입장임
  - 이는 현재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에서 실시하는 5% 보유 방식도 인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서 향후의 수산결의안에서도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대하여 중국, 일본 등 타 조업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어선에 상어 지느러미가 부착된 자연상태로 보관하려고 하는 경우 어선원들의 안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어선의 저장창고 수용능력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 존재
  - 상어문제는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향후 몇 년간 최대의 화두로 논의될 전망이 우세함
- NPOA 개정 관련 국내대책 점검 시급
  -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관련 현황 파악이 급선무이고 부수어획으로만 예외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상어피닝과 관련한 국제규범에 상응하도록 국내 업계의 현재 실무 개선 필요

- 또한 상어피닝 관련 외국의 주장에 대하여 기존의 논리 이외에 추가적인 대응책 개발 필요
- 이를 위하여 NPOA-Shark 등의 개정을 포함한 국내 대응책 수립 필요함
- 상어지느러미 피닝과 관련된 논의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관련된 구체적인 보존관리조치는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이행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
- 이와 동시에 국내 선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수산기구(RFMOs)의 규정 혹은 국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개선 필요

## 2. 국제적 IUU어업행위 규제 지속에 따른 선도적 국내 대응 필요

### ▶ IUU어업행위 관련 국제규제 지속적 강화 예상

- IUU어업행위 규제 강화 논의와 이를 위한 감시이행시스템(MCS)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속 예상
- EU, 미국, 각종 지역수산기구(RFMOs)에서 IUU어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집행 중
-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IUU어업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전체 원양어선에 의무적으로 조업감시장치(VMS) 설치 및 고의적으로 훼손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고<sup>8)</sup>, 현재는 전자조업일지(e-logbook system)시스템을 마련 중

8) 한국은 2014년 원양산업발전법의 2차례 개정을 통하여 5년 내 누범 시 최대 16억 원, 자국 민처벌조항 신설, 각종 불법어업 처벌 강화를 통하여 기국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특히 불법어업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단기간 강화하여 일반예방적 효과(chilling effect)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향후에는 FAO 항구국조치협정의 비준을 검토하고 우리 항구에서 항구국 검색 준비를 위한 제도적 및 행정적 점검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IUU어업행위 규제는 일회성 국제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과 빈곤국의 생존권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관련 규범을 우리가 선도해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함

### 3.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BBNJ)논의 수산분야 대응책 마련 시급

#### ▶ UN해양법협약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체제를 만들어 공해상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 도모 추진 중

-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BBNJ)<sup>9)</sup> 보존을 위한 국제회의가 UN과 FAO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동 회의 논의는 해양환경, 해양생태 및 공해상 조업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 대응 필요
- 특히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의 종합적 접근 및 대응 필요
- 이와 같이 해양수산분야 내 여러 분야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해수부-외교부-KMI-국립수산과학원-학계 등 T/F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 국제협상센터를 설립하여 이슈 발굴, 대응논리 개발, 회의 대응, 사후전파 등 체계적으로 관리 및 대응 필요

9) 동 회의는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ABNJ) 라고도 불리어짐

- 공해지역에서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설립에 따라 조업금지구역 설정 가능성 존재함
- 동 논의는 공해상에서 새로운 국제규범체계를 형성하는 논의하는 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5년까지 구체적인 규범의 틀을 형성하기로 추진하고 있기에 현 단계에서 꾸준히 참여하여 조업국의 이익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 우리의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법적 국내법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확립을 서둘러야 함

### ▶ 국제문서 성격(nature)

- 문제의 핵심은 공해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국제규범에 추가로 UN해양법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greement)을 제정할지 허용 여부에 있음
- 그러나, 새로이 논의되는 국제규범체계가 공해상의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하는 기존의 국제기구체제(지역수산기구(RFM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심해저기구(ISA)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면이 존재하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거버넌스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되나, 공해상 해양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체제가 왜 필요할지 아직 뚜렷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체제에 추가하여 더 신체제가 필요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점이 존재하기에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체계에 대해 찬성하기 어려운 점 존재

- 즉,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 출범보다는 가급적 기존의 UN해양법협약의 법체계 내에서 기존의 조직과 규범의 효력 증대, 각국의 상호 협조의 강화를 도모하는 접근 방법이 우리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 국제문서 범위(scope)

- 국제문서가 적용되는 범위는 공해상의 어업(fishing), 운항(shipping), 채광(mining) 등임
  -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우리로서는 가급적 어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공해상 과도어획, IUU어업행위, 파괴적 어구사용이 해양생물다양성 파괴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는 점이 BBNJ 논의 배경 및 시작점이기에 조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향후 어업을 가급적 제외할 수 있는 논리 개발 필요
  - 가급적 타 주요 조업국과 사전적으로 전략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

### ▶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

- 해양유전자원의 개념은 폭넓고 그 적용 범위도 다양하나, 핵심적인 대상은 어류 등 해양생물자원에 포함된 유전자원이 될 소지가 큼
  - 다시 말하면, 어류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의 설정 및 집행의 문제가 해양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는다면 이는 공해상의 어업자원(fisheries resources)에 대한 조업금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다른 분야도 고려해야겠지만 수산분야에 한정하여 본다면,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한국은 해양유전자원 개념 범위가 가급적이면 좁은 범위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해양보호구역(MPA) 설정

- 지역기반관리방식(area based management tools)의 하나로 논의 중
  - 현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따른 보존관리조치의 수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조업금지구역의 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해양보호구역(MPA)이 조업금지구역으로 작동하는 경우 우리나라 어선의 공해상 조업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의 보호 문제와 함께 균형감 있게 문제 접근 필요
  - 참고로, 미국은 자국민, 자국선에 해양보호구역(MPA)상 의무 부과 또는 해양보호구역(MPA) 설립을 국제기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각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해양보호구역(MPA) 설립 자체에는 찬성하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가 아닌 UN 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각국의 조화로운 협력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4. 역량강화사업 중점 지원 필요

### ▶ 교육훈련사업 중요성 부각 따른 ODA사업 우선순위 조정 필요

-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수산 및 양식 분야에서 교육훈련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향후 한국의 강점이 있는 교육훈련사업을 한국형 ODA와 역량강화사업의 핵심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
- 아프리카, 남태평양, 아시안, 남미 등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특히, IUU 관련하여 한국이 2014년에 개설한 조업감시센터(Fisheries Monitoring Center: FMC)의 조업감시시스템(MCS)상 기술적, 운영적 노하우와 경험을 남태평양 혹은 아프리카 현지 전문가 육성 목적으로 사업화 필요. 이를 통하여 현지에 한국의 불법어업 근절의지를 전달할 수 있고 현지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남태평양의 국제기구와 연결하여 조업감시시스템(MCS)과 기술훈련을 먼저 시작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임
- 향후 서부아프리카 조업감시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EJF 등 비영리단체 (NGO), 외국단체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우리 불법어업 근절의지 현지 연안국 전달 및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조업국 이미지 제고도 가능
- 최근 한국의 조업감시센터(FMC) 개소, e-logbook 시스템의 추진 등의 기술적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한국의 제도적 강화 내용을 교육 및 소개하여 연안국과 상호 협조체제 강화
- 조업감시 기술 설비 전달을 넘어서서, 사후관리에 초점을 둔 연안국 대상 교육훈련은 현지 불법어업단속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 사업으로 예상됨

## 5. 공통 어획증명서제도 심화 연구 및 대응방안 필요

### ▶ 무역장벽 제거 노력의 시작

- 노르웨이 제안으로 UN 및 FAO에서 어획증명서 개정을 위한 워크숍이 2015년 7월경(잠정) 개최될 예정
- 기존 수출용 어획증명서가 각국마다 다른 양식을 요구하는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였다는 문제제기에서 기인함. 주요 조업국 및 수산물 수출국인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상됨
- 따라서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의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준비 필요

## 6. UN 저층어업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대응 준비 시급

### ▶ 주로 남동대서양 공해지역의 저층어업이 문제됨

- 당해 공해상 저층어업에 관한 검토회의는 당초 2015년 개최예정에서 2016년으로 연기되어 다소 한숨을 돌린 형편임
- 주로 문제가 되는 수역은 남동대서양의 공해 영역이며 스페인, 중국, 한국의 조업국이 주로 활동함
- 특히 한국은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하여 우리 조업 선사들에게 조업 시 취약생태계 발견 시 확인보고의무를 부과함. 또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현재 조업실적 보고를 통한 자료수집도 원활하지 않아서 향후 관련 회의 준비에 더 노력을 경주할 필요

## V. 결론 및 향후 과제

### 1. 결론

#### ▶ IUU어업행위,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련 내용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 예상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조업국과 연안국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한 문구가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논의될 전망
  - 특히, IUU어업행위와 MCS시스템의 개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친환경기반의 접근법, 역량강화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예정
  - 상어조업과 관련하여 완전보유방식과 5%보유방식 간 논리의 지속적 대립이 예상됨
- UN 차원에서 2015년 국가관할권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의 형식 및 내용 도출, 2016년 공해상 저층어업에 관한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이의 준비를 위한 공해어족자원협정(UNFSA) 제11차 당사국회의 등 일련의 중요회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 유관기관의 T/F 구성 및 회의 대응체제 구축 및 대응 준비 데이터 및 자료 축적 시급

## 2. 향후과제

### ▶ 해양수산 관련 국제회의의 대응 국내 거버넌스 확립 시급

- 각종 수산 관련 국제적 논의와 국제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안별로 해수부-외교부-KMI-국립수산과학원-해외수산협력원 등 T/F 구성 필요
- 국제규범에 대하여 이슈 및 규칙을 선도할 국가(rule-maker)가 되기 위하여 필요
  - 심도 있는 의제 분석, 회의 대응방안 마련, 회의대응, 결과공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해외의 정책변화가 우리 원양산업 및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수산분야의 산업특성상 국제이슈에 대하여 긴밀한 대응이 더욱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수산 관련 국제회의의 이슈를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회의 자체에 참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인 ‘국제수산협력센터’(가칭)을 창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UN 수산결의안 비공식검토회의를 포함한 국제해양수산 관련 회의에서 국제수산 흐름에 대한 이해와 그 흐름 안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설득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언어와 논리의 꾸준한 개발이 필요
  - 입장이 유사한 조업국들이라 하여도 완전히 입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하는 경우는 없고, 아이슬란드, 일본, 중국 등도 한국과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도 UN 수산결의안 회의 및 관련 국제회의에서 대응 논리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제회의의 거버넌스의 조속한 확립으로 BBNJ 등 회의의 이슈가 해양환경, 수산, 해양생태 등 해수부 내의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종합적 신속 대응 가능한 장점 존재

## ▶ 국제해양법재판소 불법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 결정 국내 대응방안 필요<sup>10)</sup>

- 동 소송에서는 불법어업과 관련된 기국 및 국제기구의 책임을 주로 질의하면서 연안국의 책임도 함께 질의하였음
- 동 소송에 EU, 미국, 중국, 일본, FAO, WCPFC 등 70여 개 이상의 주요국 및 국제기구가 의견서를 제출 참여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소송으로 큰 반향을 일으킴
- 동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추후 유사 불법어업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한국은 동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물론 동 결정이 꼭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우리나라도 인근 국가의 불법조업 피해국이기 때문에 동 결정에 대하여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 소송에 직접 참가하여 의견 제출을 하지는 않음으로 국제수산물질서의 형성을 주도하는 데 적극 참여하지 못한 면은 존재함. 물론 한국이 최근 미국 및 EU로부터 불법어업국 잠정지정 받은 상황이 존재하기에 공식적 의견 표명이 국제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면은 존재함. 그러나 차후에는 가급적 국제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책임 있는 조업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제수산물질서도 주도 필요
- 특히 국제소송에 대한 국가적 경험의 축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더욱 없어진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국제소송 참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10) 지난 2015년 4월 2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서부아프리카 연안국의 국제기구인 SRFC(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가 제기한 불법어업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결정(advisory opinion)을 발표함

- IUU어업행위에 대한 각국 및 UN 차원의 관리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동 소송 결정에 따른 향후 별도의 국제소송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관련 법리 분석과 국내 적 대응법리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 해양법결의안 함께 대응 필요성

- 타 회원국의 경우에는 유엔수산결의안 회의 종료 후 시작되는 유엔해양법결의안 비공식 검토회의에도 수산결의안 비공식 검토회의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음(EU,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등)
  - 이를 통하여 해양법결의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분야의 주요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고, 해양법결의안과 수산분야가 연관된 경우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음
  -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에 우리도 양 결의안에 같이 대비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

### ▶ 해양수산 국제회의 전문가 그룹 지속 양성 필요

- 지속적인 회의 참가로 타국 수산결의안 대표단과 꾸준히 회의 논의 참여와 함께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UN 수산결의안 회의 자체에서 국익 반영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판단됨
- 참고로 타국 대표단의 경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씩 수산결의안 회의와 해양법결의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이었음
- 타국 대표단을 보면 보통 국제법률 전문가 1인(미국, EU,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유엔대표부 외교관 1인 혹은 수산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보통 5-10년 정도 참여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참가가 중요함

## 〈참고문헌〉

### 〈국내문헌〉

UN해양법협약

UN공해어족자원협정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에 관한 국제행동계획(FAO IPOA-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POA-IUU)(한국)

기국책임에 관한 자발적지침, FAO, 2014.

원양산업발전법 및 개정안

제31차 FAO 수산위원회 결과보고서, 2014. 6.

제114차 OECD 수산위원회 결과보고서, 2014. 10.

제65~69차 UN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검토회의 결과보고서, 2014. 11.

한국원양산업협회, 『2014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글로벌 해양수산 동향과 전망』, 2014.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내부자료.

### 〈국외문헌〉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sustainable fisheries, including through the 1995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nd related instruments (2003-2014)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case no.21.

UNOD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Fishing Industry, 2011.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NOAA,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403(a)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January 2013.

### 〈온라인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index.jsp>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http://www.ofis.or.kr/>

한국원양산업협회, <http://www.kosfa.org/index.asp>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UN 형사예방형사정의의회(13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inal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 <http://www.un.org/en/events/crimecongress2015/>

EU Council Regulation NO.1005/2008

EU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dex\\_en.html](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dex_en.html)]

FAO [<http://www.fao.org/fishery/topic/3195/en>]

NOAA NMFS, [<http://www.nmfs.noaa.gov>]